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04호 2019. 9. 16.(월)

규 칙

○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----- 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9월 16일

목 포 시 장 김 종 식

목포시 규칙 제1778호

목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목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관용차량**”을 “**공용차량**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**내구년수**”를 “**내구연한**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용·승합용·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, 그 변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용연수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교체승인이 가능한 총 주행거리(12만km)를 초과하여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수리당시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는 경우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 (차량연료 구입 등) 시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(이하 “연료”라 한다)또는 전기자동차 충전 등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. 다만, 공급연료 변동 등을 감안하여 단가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료 공급자로부터 일반구매 할

수 있다.

제25조의 제목 “(유류사용 정산)” 을 “(연료사용 정산)” 으로 한다.

제30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기타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행위 및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행위

제35조제1항 “관용차량” 을 “공용차량” 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 [별표 1]

차량의 차종 · 차형 · 배정대상 및 내구연한(제4조 관련)

차 종	차 형	배 정 대 상	내구연한
승 용 (전용)	대형승용차 (배기량2,000cc 이상의 차량)	○ 시 장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km초과
	대형승용차 (배기량2,000cc 이상의 차량)	○ 부시장	
승 용 (의전용)	대형승용차 (배기량2,000cc 이상의 차량)	○ 본 청 ○ 시 의회	
승 용 (업무용)	중형승용차 (배기량 1,600cc 이상 2,000cc 미만 차량)	○ 본 청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10년 또는 7년 12만km 초과
	소형승용차 (배기량1,000cc 이상 1,600cc 미만인 차량)	○ 실·과·소	
	경형승용차 (배기량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실·과·소	
	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(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 으로 분류되는 각종 짚형차량)	○ 실·과·소	
승합용	대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36인이상의 차량)	○ 실·과·소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8년간

승합용	중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차량)	○ 실·과·소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10년 또는 7년 12만km 초과
	소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)	○ 실·과·소	
	경형승합차 (배기량 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실·과·소	
화물용	대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)	○ 실·과·소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10년 또는 7년 12만km 초과
	중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)	○ 실·과·소	
	소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)	○ 실·과·소	
	경형화물차 (배기량 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실·과·소	
특수용	청소차	○ 실·과·소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간
	구급차	○ 실·과·소	
	분뇨차	○ 실·과·소	
	진료차	○ 실·과·소	
	이동수리차	○ 실·과·소	
	트럭트랙타	○ 실·과·소	
	트레일러	○ 실·과·소	
	렉카차	○ 실·과·소	
	기 타	○ 실·과·소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목포시 <u>관용 차량의</u>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공용 차량의</u> ----- ----- -----.
제4조(차량의 구분 등) 차량의 차종은 승용·승합용·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, 차량의 차종별 차형·배정대상 및 <u>내구년수</u> 은 별표 1과 같다.	제4조(차량의 구분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내구연한</u> ----- -----.
제12조(차형변경 승인)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<u>승합용·화물용</u>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, 그 변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	제12조(차형변경 승인) ① ----- ----- <u>승용·승합용</u> ·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제13조(차량교체 승인) ① ~ ②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용연수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교체승인이 능한 총 주행거리(12만킬로미터이상)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교체승인이 가능한 총 주행거리(12만킬로미터이상)3분의 2를 초과하여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수리당시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는 경우	제13조(차량교체 승인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<u>(12만km)를 초과하여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수리당시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는 경우</u>
제24조(유류구입 등) 시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(이하 “유류”라 한다)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. 다만, 유가변동등을 감안하여 단가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류공급자로부터 일반구매 할 수 있다.	제24조(차량연료 구입 등) 시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(이하 “연료”라 한다)또는 전기자동차 충전 등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. 다만, 공급연료 변동등을 감안하여 단가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료 공급자로부터 일반구매 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제25조(유류사용 정산) ① ~ ② (생략)	제25조(<u>연료</u> 사용 정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제30조(금지사항)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. 1. ~ 13. (생략) 14. <신설>	제30조(금지사항)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<u>기타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행위 및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행위</u>
제35조(공용차량 운전원의 직원 직접운전) ① 시장은 <u>관용차량</u> 에 대한 운전원 이 부족하여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통한 업무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차량 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 소속 직원(이하 “공용차량 운전원 외 직원”이라 한다)이 배차를 받아 직접 운전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략)	제35조(공용차량 운전원의 직원 직접운전) ① ----- <u>공용차량</u> 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현행				개정안			
【별표 1】 차량의 차종·차형·배정대상 및 <u>내용연수(제4조 관련)</u>				【별표 1】 차량의 차종·차형·배정대상 및 <u>내구연한(제4조 관련)</u>			
차종	차형	배정대상	내용연수	차종	차형	배정대상	내구연한
승용 (전용)	대형승용차 (배기량2,000cc 이상의 차량)	○ 시장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간	승용 (전용)	대형승용차 (배기량2,000cc 이상의 차량)	○ 시장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km 초과
	중형승용차 (배기량1,600cc 이상 2,000cc미만 차량)	○ 부시장			대형승용차 (배기량2,000cc 이상의 차량)	○ 부시장	
승용 (의전용)	대형승용차 (배기량2,000cc 이상의 차량)	○ 본청 ○ 시의회		승용 (의전용)	대형승용차 (배기량2,000cc 이상의 차량)	○ 본청 ○ 시의회	
승용 (업무용)	중형승용차 (배기량 1,600cc 이상 2,000cc미만 차량)	○ 본청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10년간	승용 (업무용)	중형승용차 (배기량 1,600cc 이상 2,000cc미만 차량)	○ 본청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10년 또는 7년 총주행거리 12만km초과
	소형승용차 (배기량1,000cc 이상 1,600cc 미만인 차량)	○ 실과소			소형승용차 (배기량1,000cc 이상 1,600cc 미만인 차량)	○ 실과소	
	경형승용차 (배기량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실과소			경형승용차 (배기량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실과소	
	꺽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(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꺽형차량)	○ 실과소			꺽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(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꺽형차량)	○ 실과소	
승합용	대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)	○ 실과소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8년간	승합용	대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)	○ 실과소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8년간

승합용	중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차량)	○ 실패소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10년간	승합용	중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차량)	○ 실패소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10년 또는 7년 총주행거리 12만km초과
	소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)	○ 실패소			소형승합차 (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)	○ 실패소	
	경형승합차 (배기량 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실패소			경형승합차 (배기량 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실패소	
화물용	대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)	○ 실패소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10년간	화물용	대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)	○ 실패소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 10년 또는 7년 총주행거리 12만km초과
	중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)	○ 실패소			중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)	○ 실패소	
	소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)	○ 실패소			소형화물차 (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)	○ 실패소	
	경형화물차 (배기량 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실패소			경형화물차 (배기량 1,000cc 미만인 차량)	○ 실패소	
특수용	청소차	○ 실패소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7년간	특수용	청소차	○ 실패소	차량의 최초등록일 부터7년간
	구급차	○ 실패소			구급차	○ 실패소	
	분뇨차	○ 실패소			분뇨차	○ 실패소	
	진료차	○ 실패소			진료차	○ 실패소	
	이동수리차	○ 실패소			이동수리차	○ 실패소	
	트럭트렉타	○ 실패소			트럭트렉타	○ 실패소	
	트레일러	○ 실패소			트레일러	○ 실패소	
	렉카차	○ 실패소			렉카차	○ 실패소	
	기 타	○ 실패소			기 타	○ 실패소	